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사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담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감액에 대한 안내

보험료 감액은 부분해약이므로, 감액부분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대 기본 지키기 (품질보증해지 관련)

청약 시 약관 및 계약자 보존용 청약서 미전달, 약관 중요 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준에 관한 안내

주계약 보장부분에 적용한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다만, 동 이율은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주계약의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75%입니다.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방카슈랑스 부조의 신고센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충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내일의 힘 NH즉시연금보험 | 무배당 | 1804



종ായ 27,065개

요즘 따라 부모님의 얼굴이 밝아진 이유는? **#내일의힘**
#내일을 위한 #즉시연금보험 #행복해요 NH농협생명

#한달후부터 #연금받기 #싱글벙글 #든든한내일 #누적 판매 건수 27,065건('14.4~'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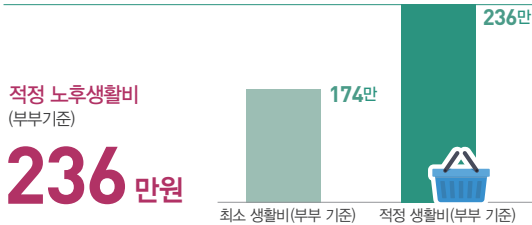
부족했던 노후준비에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립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17년

곧 다가올 노후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50대 이상 부부가 노후에 매달 필요한 적절한 생활비는
약 236만원, 특별한 질병 없이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약 174만원이 필요합니다.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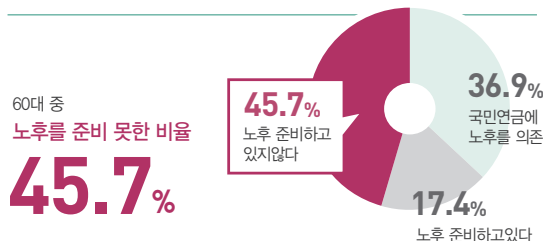
236 만원

최소 생활비(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부부 기준)

출처 : 통계청, 2017년

하지만 준비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현실!

60대 이상 인구 중 45.7%는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며
노후준비를 한 54.3% 중 36.9%는 국민연금에 노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60대 중
노후를 준비 못한 비율

45.7%

내일의힘 NH즉시연금보험

| 무배당 | 1804



실세금리에 연동한 안정적인 연금지급

고금리시대에는 실세금리로, 저금리시대에는
최저보증이율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가입 한달 후부터 연금 지급 개시

퇴직금, 사업정리자금 등의 목돈을 통해 가입 후
만 1개월 뒤부터 노후생활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원금보장으로 상속기능 강화

[상속연금형(원금보장형) 가입시]

상속연금형(원금보장형) 가입후 10년 경과시
납입보험료 전액 상속이 가능합니다.



보험차익 비과세상품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 : 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가입, 남자 ※ 이율기준 :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 2018년 3월 기준 2.52%(매월 변동), 단위 : 만원(미만 절사

구분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 가정	공시이율 2.52% 가정
종신 연금형	기본형	10년 보증	매월 33 만원	매월 39 만원	매월 39 만원
		20년 보증	매월 31 만원	매월 37 만원	매월 38 만원
		30년 보증	매월 29 만원	매월 35 만원	매월 35 만원
		100세 보증	매월 24 만원	매월 30 만원	매월 31 만원
	조기집중형 (10년 보증)	조기집중 기간(10년)	매월 47 만원	매월 55 만원	매월 55 만원
	조기집중형 (20년 보증)	조기집중 기간(20년)	매월 37 만원	매월 43 만원	매월 43 만원
확정기간 연금형	5년 확정		매월 165 만원	매월 170 만원	매월 170 만원
	10년 확정		매월 85 만원	매월 90 만원	매월 90 만원
	15년 확정		매월 58 만원	매월 64 만원	매월 64 만원
	20년 확정		매월 45 만원	매월 50 만원	매월 51 만원
	30년 확정		매월 32 만원	매월 37 만원	매월 38 만원
상속 연금형	기본형		매월 10 만원	매월 20 만원	매월 20 만원
	원금 보장형	10년 이내	매월 7 만원	매월 17 만원	매월 17 만원
		10년 초과	매월 6 만원	매월 20 만원	매월 20 만원

주1) 상기 예시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보증이율(1.25% 적용, 단, 상속연금형원금보장형의 '10년 초과'는 11차년도 1회차 최저보증이율 0.75% 적용), 2018년 현재 평균 공시 이율 및 2018년 3월 현재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2.52%)로 예시된 1차년도 1회차(단, 상속연금형원금보장형의 '10년 초과'는 11차년도 1회차) 연금액이며,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상기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주2)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율들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일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52%이며, 최저보증 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75%입니다.)

주3) 간독규정 제2-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8년)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주4) 상기 예시된 최저보증이율 가정 시 연금액은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임을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최저 보증 연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 변동 등에 따라 상기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주5) 종신연금형(기본형/조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교세가 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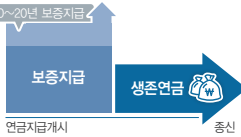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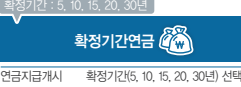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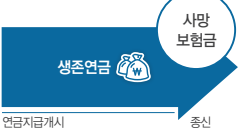
연금지급형태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한도)	가입나이
종신 연금형	기본형(10~30년, 100세 보증지급)	종신	일시납 (기본보험료 1,000만원 이상)	45세 ~ 80세
	조기집중형 (10~20년 보증지급)			
확정기간연금형(5,10,15,20,30년)		5,10,15, 20,30년		
상속 연금형	기본형	종신		
	원금보장형			

보장내용_사망보험금(종신연금형 제외)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확정기간 연금형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10%
상속 연금형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적립금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10년 초과 시점 이후에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적립금

주1) 종신연금형은 연금지급 개시 후 사망시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2) 주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연금 지급형태	보험금 지급예시	지급금액
중신 연금형 (기본형)	 연금지급개시 → 종신	보장개시일로부터 만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종신토록 지급.
중신 연금형 (조기 집중형)	 연금지급개시 → 종신	보장개시일로부터 만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 동안의 연금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월액을 종신토록 지급. • 보증지급기간 : 연금액 × 2배 • 보증지급기간 이후 : 연금액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개시 → 확정기간(5, 10, 15, 20, 30년) 선택	보장개시일로부터 만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생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동안 지급.
상속 연금형 (기본형)	 연금지급개시 → 종신	• 보장개시일로부터 만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연금월액으로 종신토록 지급. • 사망시에는 사망시 수익자에게 사망시점의 연금 계약직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상속 연금형 (원금 보장형)	 연금지급개시 → 종신	• 보장개시일로부터 만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연금월액으로 종신토록 지급. (다만, 가입 후 10년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월액을 적게하여 10년 초과시점 이후의 연금계약 직립금이 주계약 보험료와 같도록 함) • 사망시에는 사망시 수익자에게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직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주1) 연금계약 직립금이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제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차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주2)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75%입니다.

주3)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주4) 연금월액은 보장개시일 이후 만개월 이후부터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애 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주5) 종신연금형의 경우 종신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기본형은 10년 ~ 30년, 100세 조기집중형은 10년 ~ 2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기본형은 10년 ~ 30년, 100세, 조기집중형은 10년 ~ 20년까지의 미지급원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6)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확정기간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의 미지급원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7)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또는 연금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8)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준 : 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가입, 남자
※ 이율기준 :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 2018년 3월 기준 2.52%
(매월 변동), 단위 : 만원(미만 절사)

상속연금형(기본형)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 가정		공시이율 가정 (연단위 복리 2.52%)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억원	9,716 만원	97.1%	9,716 만원	97.1%	9,716 만원	97.1%
3년		9,707 만원	97.0%	9,707 만원	97.0%	9,707 만원	97.0%
5년		9,696 만원	96.9%	9,696 만원	96.9%	9,696 만원	96.9%
7년		9,683 만원	96.8%	9,683 만원	96.8%	9,683 만원	96.8%
10년		9,658 만원	96.5%	9,658 만원	96.5%	9,658 만원	96.5%
20년		9,658 만원	96.5%	9,658 만원	96.5%	9,658 만원	96.5%

• 기준 : 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가입, 남자
※ 이율기준 :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 2018년 3월 기준 2.52%(매월 변동), 단위 : 만원(미만 절사)

상속연금형(원금보장형)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 가정		공시이율 가정 (연단위 복리 2.52%)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억원	9,748 만원	97.4%	9,746 만원	97.4%	9,746 만원	97.4%
3년		9,805 만원	98.0%	9,801 만원	98.0%	9,801 만원	98.0%
5년		9,862 만원	98.6%	9,857 만원	98.5%	9,857 만원	98.5%
7년		9,919 만원	99.1%	9,914 만원	99.1%	9,913 만원	99.1%
10년		10,000 만원	100.0%	10,000 만원	100.0%	10,000 만원	100.0%
20년		10,000 만원	100.0%	10,000 만원	100.0%	10,000 만원	100.0%

주1)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제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예시기준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공시이율입니다.
• 2018년 3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52%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입니다.
• 감독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현재(2018년)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주3)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주4)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율과 외부표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여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주6)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하여 비과세해 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신연금형(기본형/조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2018년 현재 평균공시이율 및 2018년 3월 현재 공시이율에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